|  |  |  |
| --- | --- | --- |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상무부령 2017년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상무부 제10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중산(鐘山)  2017년 7월 30일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조치 적용대상 및 특수관계자간 인수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비(非) 외국인투자기업 인수합병 및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에 대하여 등록(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6년 제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5조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항(款)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둔다 :  '인수합병, 흡수합병 등 방식으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래가 이 방법에 규정한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설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3)호로 둔다 :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거래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3.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條)를 추가하여 제7조로 둔다 :  '외국인투자자의 비(備) 외국인투자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투자가 이 방법에 규정에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제기구에서 증권등기가 이뤄지기 전 또는 이뤄진 후 30일 내에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설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상장기업이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전략투자를 유치하는 거래가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제기구에서 증권등기가 이뤄지기 전 또는 이뤄진 후 30일 내에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변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備案) 절차가 완료된 후 전략투자의 등록(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정보공시의무인이 <증권법>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7)호로 둔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적 실제통제인의 지분구조도(변경사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적 실제통제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아울러, 첨부 "온라인 제출서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5. 제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8)호로 한다 :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회사의 지분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국내기업의 <기업해외투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첨부 "온라인 제출서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6. 첨부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서류"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표"를 삭제하고; 첨부 2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서류"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표"를 삭제한다.  이외에, 해당 조항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  | **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  商务部令2017年第2号  《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已经商务部第101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长　钟山  2017年7月30日  为推进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体现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的改革方向，对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非外商投资企业以及对上市公司实施战略投资，不涉及特别管理措施和关联并购的，适用备案管理。商务部决定，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商务部令2016年第3号）作如下修改：  一、第五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  “由于并购、吸收合并等方式，非外商投资企业转变为外商投资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按照本条第一款办理设立备案手续，填报《设立申报表》。”  二、第六条第一款增加一项，作为第（三）项：  “并购设立外商投资企业交易基本信息变更。”  三、增加一条，作为第七条：  “外国投资者战略投资非外商投资的上市公司，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应于证券登记结算机构证券登记前或登记后30日内办理备案手续，填报《设立申报表》。  外商投资的上市公司引入新的外国投资者战略投资，属于备案范围的，应于证券登记结算机构证券登记前或登记后30日内办理变更备案手续，填报《变更申报表》。  备案完成后，如战略投资备案信息发生变更的，应于《证券法》及相关规定要求的信息披露义务人履行信息披露义务之日起5日内办理变更备案。”  四、第七条第一款增加一项，作为第（七）项：  “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股权架构图（变更事项不涉及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变更的，无需提供）”，并在附件的“在线提交材料”部分增加此项内容。  五、第七条第一款增加一项，作为第（八）项：  “涉及外国投资者以境外公司股权作为支付手段的，需提供获得境外公司股权的境内企业《企业境外投资证书》”，并在附件的“在线提交材料”部分增加此项内容。  六、删除附件1“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材料”中的“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表”；删除附件2“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材料”中的“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申报表”。  此外，对相关条款的顺序作相应调整。 |